

동물복지를 위한 입법적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Litigation for Animal welfare

김 명 엽* · 박 규 용**
Kim, Myung-Yeop · Park, Kyu-Yong

목 차

- I. 서론 : 동물복지 논의의 필요성
- II. 동물복지에 대한 정의와 사상적 배경
- III. 동물복지를 위한 법제의 동향
- IV. 동물복지를 위한 법제의 개선
- V. 결론

국문초록

동물복지는 동물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하며, 환경과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 도덕률의 자연스러운 확장으로 동물복지를 바라보는 것이다. 동물의 존재는 널리 인간 생활과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동물과의 공존을 위해 동물복지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조정해야 할 때이다.

이처럼 동물복지는 구체적으로 동물에게 청결한 주거환경의 제공, 관리, 영양 제공, 질병예방 및 치료, 책임감 있는 보살핌, 인도적인 취급, 필요한 경우의 인도적인 안락사 등 동물의 복리의 측면을 고려한 인간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겠

논문접수일 : 2020. 07. 16.

심사완료일 : 2020. 08. 11.

게재확정일 : 2020. 08. 11.

* 법학박사 ·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실장 (주저자)

** 법학박사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교신저자)

고, 동물의 복지에 관한 논의는 성서를 기원으로 해서 현대에는 싱어와 리건의 논의가 있다.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법은 1835년 영국의 동물학대금지법과 1911년의 동물보호법이었으며, 영국의 입법례를 따라 1966년 미국의 동물복지법 등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도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우리 민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물의 복지를 위한 입법적 개선으로서 몇 가지 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물건을 정의하고 있는 민법 제98조를 개정하여야 한다. 즉 동물의 법적 지위를 사물이라는 시각에서 지각적 존재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사람과 사물 사이의 동물에 대한 법적 지위를 사람, 물건과는 다른 제3의 범주로 인식하는 것은 최소한 동물보호에 대한 공정성을 확립할 것이다. 둘째, 동물신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행 신탁법상의 제59조를 활용하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유증보다 훨씬 유연하고 다양하게 재산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 소유의 반려동물의 생존보호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재산관리까지 맡길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고 평가된다. 셋째, 맹견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현실에서 맹견소유자 중 보험미가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동물복지, 반려동물, 동물의 지위, 동물신탁, 동물보호법, 동물법제

1. 서론 : 동물복지 논의의 필요성

최근 우리사회에는 채식주의자의 증가, 애완동물이라고 지칭하던 것을 반려동물로 변경, 동물권의 등장과 동물복지의 보편화 등 동물들에게도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를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반려동물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된 현대사회에서 인간과 동물은 점점 더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동물복지(animal welfare)는 동물의 복리를 보장하는 윤리적 책임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동물에게 청결한 주거환경의 제공, 관리, 영양제공, 질병예방 및 치료, 책임감 있는 보살핌, 인도적인 취급, 필요한 경우의 인도적인 안락사 등

동물복리의 여러 측면을 고려한 인간적인 의무”라고 정의할 수 있다.¹⁾ 또한 세계동물보호협회(WSPA)의 선언문에서는 “복지는 동물의 신체적, 행동적, 정신적 요구의 충족도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동물의 복지는 동물의 입장에서 동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²⁾

동물복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64년 영국의 Harrison 이 Animal Machines라는 저서에서 동물학대 실태를 고발하면서부터이다. 이는 현대적 동물복지운동을 촉발하여 EU는 1978년 농장동물 보호를 위한 이사회결정을 채택하였으며, 영국은 1979년 농장동물복지위원회(Farm Animal Welfare Council)를 설치하고 동물이 누려야 할 다섯 가지 자유를 제시하였다. 이후 선진국에서는 동물복지의 대상을 실험동물, 반려동물, 야생동물 등으로 확대하고, 동물복지법은 물론 연차행동계획, 동물복지지침, 사육규정 등을 제정하였다. 우리의 동물복지는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동물의 종류별로 개별법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우리의 동물보호법은 동물일반에 적용되는 것으로 구체성이 부족하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을 계기로 동물복지의 이념이 법적으로 수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동물의 사육, 관리, 운송, 도살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축산법 등의 개별법에서도 동물복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현행 법제는 전반적으로 그 범위가 좁고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거나 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아직까지는 동물의 생명존중이나 동물복지라는 공익은 축산업의 발전이나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이익에 뒤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농장동물도 사육, 운송, 도축 등으로 구분하여 개별법규

1) 채형복, “EU 동물복지정책의 한-EU FTA에 대한 함의”, 『통상법률』 제95호, 법무부 국제법무과, 2010, 43면.

2) 우리나라의 동물복지는 일반적으로 반려동물(개·고양이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모든 동물에 대하여 폭넓게 동물복지의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농장동물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점이 국내의 상황과는 대조를 이룬다.

3) 박종원, “우리나라 동물복지축산의 현황과 법적 과제”, 『환경법과 정책』 제19권, 2017. 9, 131면.

를 제정하고 있으며, 동물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전히 동물복지에 대한 목표정립, 법제와 정책의 구체성이나 실현가능성 등에서 문제가 많으며, 정책집행체계 역시 부실한 편이다. 또한 인력이나 재정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산적해 있다. 일부 농장동물 복지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부족하다. 제도를 도입한다고 동물복지가 향상되는 것은 아니고 적실한 정책수단이 구비되어야 한다.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법제를 도입하고 연차계획을 수립하는 것만으로 성과를 거둘 수 없으며, 정책수단에 대한 실질적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연구가 불가결하다.⁴⁾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동물의 복지에 대한 역사와 각국의 동물법제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동물법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동물복지에 대한 정의와 사상적 배경

1. 동물복지의 정의

동물복지 개념의 전 세계적인 기준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에서 정립되었다. OIE에 따르면 ‘동물복지’(animal welfare)란 동물이 살아가는 조건에 관한 개념으로, 동물이 건강하고 편안하면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안전하며 타고난 습성을 표현할 수 있고, 고통·두려움·괴로움과 같은 불쾌한 상황을 겪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 정의는 영국 농장동물복지위원회(Farm Animal Welfare Council)가 제안한 동물의 5대 자유, 즉 (i) 굶주림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hunger and thirst), (ii) 불쾌감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discomfort), (iii) 고통·상해·질병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pain, injury and disease), (iv)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

4) 김순향, “동물복지(Animal welfare) 증진을 위한 맞춤형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s) 개발에 관한 연구 -농장동물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2권 제3호, 한국정책과학학회, 2018. 9, 102면.

유(Freedom to express normal behavior), (v) 공포와 불안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fear and distress)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⁵⁾ 현재 매우 진보적인 동물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 EU에서는 동물복지를 “지능을 갖춘 동물에게 죽기 전까지의 삶을 최대한 공통 없이 누리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정의한다.⁶⁾

한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동물복지라는 용어는 인간의 영리를 위한 동물의 이용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필요에 따라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수용하는 대신 그러한 행위의 주체인 인간에게 동물 이용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부과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동물복지가 인간과 동물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인간이 동물을 이용함에 있어 “동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 책임의 관점에서 동물에게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다.⁷⁾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복지단체인 영국의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는 닭, 오리, 돼지, 젓소 등 각종 동물들에 대한 복지표준을 각각 개발하여 농장동물에 적용하고 있다.⁸⁾ 즉 농장동물 복지표준은 기본적으로 사육공간, 먹이급여, 수의학적 관리 등에 대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이러한 관리행위의 효과가 농장동물의 복지수준에 어떻게 적절하게 반영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실제 농장동물복지에 대한 신뢰할만한 평가방법의 도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RSPCA는 농장동물의 육체적 정신적 복지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welfare outcome assessment)을 개발하고, 평가결과와 농장동물복지 기준과의 연계성을 통해 원하는 수준의 농장동물 복지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⁹⁾

2. 동물복지의 사상적 배경

5) <<https://www.gov.uk/government/groups/farm-animal-welfare-committee-fawc>> (최종확인 2020. 6. 22).

6) European Court of Auditors, *Animal welfare in the EU: closing the gap between ambitious goals and practical implementation*, European Union, 2018, p.7.

7) 조희경, “농장동물복지 실태와 축산물의 안전성”, 동물복지와 축산물 안전성의 관계 세미나자료,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 2007, 2면.

8) <<https://science.rspca.org.uk/sciencegroup/farmanimals/standards>> (최종확인 2020. 6. 22).

9) 우병준, “EU 동물복지정책 동향”, 「세계농업」 제16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2면.

1) 성서

서양의 종교 전통들인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는 인간이 아닌 동물들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았다. 그들은 성대한 제사의식을 위해 흔히 가축을 희생물로 바치곤 했으며, 성경의 창세기는 처음부터 인간과 동물의 관계 및 신분적 차이를 명시하고 있다.¹⁰⁾ 기독교적 전통의 주류는 신의 이미지를 그대로 간직한 채 창조된 인간만이 영성을 가지며 동식물들과는 달리 인간은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모두 장악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마디로 동식물은 인간과는 다른 차원의 존재들이며 따라서 인간은 그것을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기본 인식을 갖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하여 “그런 후 인간으로 하여금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다”(창세기 2장 18-19절)는 창세기의 보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동물의 통치를 위탁하셨다는 뜻으로 인간이 자신의 의지대로 동물을 일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며, 구약에서 다른 이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와의 특별한 관계를 시사하는 것으로, 창세기에서 말하는 통치란 다른 피조물을 보호하고 사랑해야 할 인간의 책임을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다.¹¹⁾

2) 서양에서 동물복지 및 동물의 권리에 대한 시각의 발전

중세 이탈리아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오로지 인간만이 사고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 믿었으며, 반면 동물과 다른 생명체는 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인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¹²⁾ 즉 신의 관점에서 볼

10) 성경의 내용 중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창세기 1장 26절)라는 부분과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창세기 9장 3절)라는 언급 등은 신이 인간에게 동식물의 사용권을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1) 김형민, “성서적 전통에서 본 동물의 윤리와 법”, 『종교문화비평』 제21권,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종교문화비평학회, 2012, 90면.

12) 박승찬, “인격에 대해 영혼-육체의 통일성이 지니는 의미 - 토마스 아퀴나스의 작품들을 중심

때 비이성적인 존재는 아무런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은 오직 이성적 존재의 목적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아퀴나스가 비록 ‘권리’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오직 인간만이 도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분명한 입장이다. 심지어 그는 인간이 동물에게 잘못을 범할 수 없으며, 그럴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도덕적으로 중요한 존재인 인간에게 간접적으로 잘못을 범할 때뿐이라고 주장했다.¹³⁾ 이러한 전통적인 견해는 서양의 철학이 인간중심적인 가치이론을 형성하도록 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동물의 권리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자연의 권리가 있다. 자연의 권리는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 산, 강 등 자연물에도 권리가 있다고 본다. 이는 미국에서 주장된 것으로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을 원고로 한 소송에서 비롯되었다.¹⁴⁾ 이는 인간 중심적 사고의 법체계를 벗어나서 자연에 대해 독자적 주체성을 인정하고 독자적인 이해와 이익을 가지는 권리적 주체로서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서, 자연의 권리라는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권리의 개념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장은 소송이고 자연의 권리가 보다 실질적인 보호가치가 있는 것으로 주장·보호되기 위하여 이러한 자연의 권리가 법적 권리로서 인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뉴잉글랜드에서 유럽 식민지 개척자들에 의해 제정된 최초의 법령인 매사추세츠주 자유법전(The Massachusetts Body of Liberties)은 그 누구도 인간을 위해 기르는 동물에 대한 학대나 잔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는데,¹⁵⁾ 이 법은 서양 최초의 동물복지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으로-”, 「철학사상」 제35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0, 80면. Thomas Aquinas는 신학대전(1268년)에서 인간의 하위에 있는 동물과 여러 피조물들이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川上恵江, “ヨーロッパ思想史における動物観の変遷”, 「文学部論叢」, 89(歴史学篇), 熊本大学学術リポジトリ, 2006, 32면.

- 13) 박찬구, “동물권의 문제와 상생의 생명윤리”, 「윤리연구」 제83호, 한국윤리학회, 2011, 56면.
 14) 1972년 Sierra Club v. Morton 사건에서 William O. Douglas 판사가 소수의견으로 제시한 내용으로서, 자연은 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원고적격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환경문제에 있어서 사람이 전체 생태계 공동체를 대표하여 항변 할 수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자연의 권리와 환경단체의 원고적격 간 상호 관련성을 연결한 것으로 유명하다(소병천, “자연의 법적 지위에 대한 환경법적 소고”, 「환경법연구」 제31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009, 276면).
 15) The Massachusetts Body of Liberties : Article 92. *No man shall exercise any Tyranny or Crueltie towards any brute Creature which are usuallie kept for man’s use.* 이와 같은 점에서 개신교가 동물복지 개념의 재생과 보급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Piers Beirne,

17세기 과학자 데카르트는 동물이 감각능력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이성이 없기에 고통을 고통으로 경험한다고 볼 수 없고,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존재에게는 고통을 준다는 말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가 말하는 동물과 인간의 근본차이는 언어능력과, 사고능력의 차이이며, 동물에게는 영혼은 물론 의식도 없고 언어 및 사고 능력도 없으며 일체의 경험이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물은 단지 '기계'에 불과하다¹⁶⁾고 주장하였다.¹⁷⁾ 칸트 역시 동물에게 인간과 같은 도덕적 지위를 허용하지 않았다. 동물은 이성적 사유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인간의 필요에 봉사하기 위한 도구적 가치만 지닐 뿐 결코 도덕적 존재들의 영역인 '목적의 왕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로크는 동물도 감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간이 불필요하게 잔인하게 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하면서 동물에 대한 관대함은 동물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¹⁸⁾

한편 공리주의자인 벤담은 동물의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동물이 처한 위치를 흑인 노예의 처지와 비교하면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비판하였다. 즉 동물 역시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기에¹⁹⁾ 인간과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 벤담은 윤리의 주체를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존재로 확장함으로써, 모든 인간의 행복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근대 평등주의의 경험론적 토대를 세웠고, 윤리의 주체를 인간 뿐 아니라 동물에게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동물해방론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다. 쾌락과 고통을 감지할

Confronting Animal Abuse: Law, Criminology, and Human-Animal Relationships,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9, p.70).

- 16) 데카르트는 '방법서설 V부'에서 동물기계론을 제창하고, 동물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보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경희, "데카르트의 동물론에서 자동기계와 감각의 문제 -데카르트주의적 '동물기계'의 한계 넘어서기-", 「철학탐구」 제34집,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13, 147면.
- 17) 구미정, "동물의 권리와 하나님의 형상: 영화 <노아>를 중심으로", 「생명연구」 제33집,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2016, 25면.
- 18) 조원용, "동물관련 법제의 입법과정에 관한 일고찰: 지각적 존재(sentient beings)와 업(業, karma)을 기준으로", 「법학논총」 제33권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83면.
- 19) 벤담은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를 유정적 존재(sentient being)라고 하여 어떤 존재에 대한 윤리적 고려의 대상은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허 경, "동물해방을 바라보는 눈", 「분자생물학 뉴스」, vol.21 no.4,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09, 4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모든 존재가 행복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²⁰⁾

3) 18세기 유물론과 인도주의

인간의 여러 능력이 역사적 발전에서 점차적으로 획득된 것이라고 주장한 18세기의 계몽사조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점점 불분명해졌다. 프랑스의 의사이자 철학자로서 유물론자인 La Mettrie는 그의 저서 ‘인간기계론’(L’Homme Machine, 1747년)에서 인간 존재를 무엇보다도 물질로서 인식하고 기계론적, 유물론적인 자연적 인간관을 전개하였다.²¹⁾ 데카르트의 동물기계론을 발전시켜 인간도 일종의 기계로 인식하여 정신과 신체가 일원화된 상관관계를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개념은 당시 기독교적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다. 특히 인간의 모든 정신적 행위에 해당하는 현상을 신체조직의 기계적 조작으로 설명함으로써, 인간자체를 완전한 기계로 해석하고,²²⁾ 인간도 동물과 다르지 않은 존재라고 주장하였다.²³⁾ 그는 정신적 작용이 이루어지는 인간의 뇌가 고등동물의 뇌와 구조상 다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인간도 동물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였고, 다만 그 크기나 복잡성에서는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인간에게는 사고라는 속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²⁴⁾

4) 현대에서의 논의

‘동물복지’에 관한 논의는 1964년 Ruth Harrison의 「Animal Machines」이라는 책을 통해 동물이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불안, 두려움, 좌절 및 기쁨 등

20) 정원규, “벤담-도덕 및 입법의 원리서설-”, 「철학사상」 별책 제2권 제8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3, 68면.

21) 임진호·천의영, “기계인간의 신체변화에 따른 물리적 공간변화의 사례에 관한 연구라 메트리의 인간기계론을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21권,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12, 132면.

22) 임진호·천의영, 위의 논문, 133면.

23) 조영란, “라 메트리의 「인간기계론」에 나타난 심신이론과 18세기 생물학”, 「한국과학사학회지」 제13권 2호, 한국과학사학회, 1991, 146면.

24) 조영란, 위의 논문, 150면.

을 느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65년 Harrison의 주장에 따라 영국정부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였고, 이를 시발점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여론이 유럽전역으로 확산된 것이다.

1975년 피터 싱어(Peter Albert David Singer)는 공리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동물해방론을 주장하였는데,²⁵⁾ 그의 사상적 배경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주장한 Jeremy Bentham의 공리주의이고, 윤리와 정의의 문제를 고통의 지각이란 측면에서 파악한다. Singer가 말하는 윤리적 토대는 결과주의적 이익평등고려의 원칙을 윤리의 보편적 기준으로 정립하고, 평등의 최소 원리인 이익평등고려의 원칙을 인간 이외의 다른 개체들에게까지 동등하게 적용할 것을 주장한다.²⁶⁾ 또한 Singer는 Joseph Fletcher의 인격성의 특징을 받아들여 동물들 중에서도 인격체로 여길 만한 개체가 있으므로, 인간과 동물에게는 정도의 차이만 있지 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한다.²⁷⁾ 이것은 동물해방론을 인간 평등의 확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과 인간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과 동물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모두 단일한 평등의 이념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다.²⁸⁾ 이러한 이익평등고려의 법칙은 세계의 빈곤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은 물론 동물과 자연생태계를 돌보아야 할 인간의 책무에 대한 윤리적 근거가 된다.²⁹⁾

이에 비하여 실질적인 동물권을 주장한 사람은 Tom Regan이다. 그는 1983년 동물권 옹호론(The Case for Animal Rights)을 발간하여, 동물복지나 도덕적 고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동물의 권리’를 제창하였다. Regan에 의해 인간은 어디까지나 목적으로 다루어져야지 수단으로 다루어져선 안 된다는 칸트의 사

25) 피터 싱어의 동물해방론은 고통 받는 동물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촉발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을 도덕적 사유과정으로 이끌었다고 평가된다. 김성환, “싱어의 동물해방과 사유와 실천 능력 함양으로서의 도덕 교육”, 「인문과학연구」 제35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433면.

26) 김항철, “피터 싱어의 동물해방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확장전략”, 「인문학연구」 제118권,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254면.

27) 정창록, “생명 윤리론에서 피터 싱어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생명윤리」 제12권 제2호, 한국생명윤리학회, 2012, 21면.

28) 곽정훈, “피터 싱어의 동물해방론 옹호”, 「도덕윤리과교육」 제50호,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16, 116면.

29) 김선우, “동물복지의 개념 -윤리적 근거 및 소비자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춘계학술대회논문집」, 한국소비자학회, 2014, 126면.

고가 동물에까지 확장되었는데, 그의 주장은 동물의 권리를 위한 많은 활동가들에게 인정되고 있다.³⁰⁾ 이처럼 동물보호를 위한 도덕적·윤리적 접근을 통해 다른 종에 대한 생명가치를 구현하고, 인간중심주의적 사고를 극복하는 동시에 인간과 동물이 공생할 수 있는 논리적 기반이 마련되었다.³¹⁾

III. 동물복지를 위한 법제의 동향

1. 각국의 법제

1) EU

EU의 동물복지는 영국에서부터 진행된 현대적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지금은 이미 일반화된 개념이다. 전 세계적으로 동물복지 관련 입법과 정책도입은 EU에서 가장 먼저 진행되었으며, EU의 동물복지 축산 관련 법률은 1978년에 채택된 “농업목적으로 사육된 동물의 보호를 위한 유럽 협정의 체결에 관한 이사회 결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가 1987년에 서명하고 1992년 발효된 “애완동물의 보호에 관한 유럽 조약”은 애완동물의 보호를 전반적으로 결정한 국제법규로서 현시점에서도 이 조약이 유일하고, 독일, 프랑스, 북유럽 국가들이 이미 서명·비준을 완료하여, 현재도 유럽의 애완동물 보호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1997년 EU이사회에서는 동물보호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영국 농장동물복지위원회의 제안과 같은 5가지 사항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EU지침 98/58/EEC가 제정되어 모든 종류의 동물에 대한 일반적인 보호규정이 마련되었다. 1999년 5월 암스테르담조약에서 EU는 동물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점을 인정하고,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의정서(protocol on the protection and

30) 김일방, “동물의 권리를 둘러싼 논쟁 -리건(T. Regan)과 코헨(C. Cohen)의 견해를 중심으로-”, 『환경철학』 제20권, 한국환경철학회, 2015, 175면.

31) 채형복, 앞의 논문, 51면.

welfare of animals)를 합의하였다. 동 의정서에서 EU 각 기관 및 회원국은 EU의 농업, 운송, 역내시장 등 EU의 정책, 법령 등을 수립 제정할 때에는 반드시 동물복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천명함으로써, 관련 모든 EU정책에 있어 동물복지가 실질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후 EU의회는 2007년부터 모든 스톨사육 및 송아지 나무틀(veal crate) 사육을 금지하고,³²⁾ 2006년 1월부터 성장촉진제, 항생제 사용을 전면 금지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³³⁾

한편 동물보호에 대한 의무를 헌법에 두고 있는 국가도 있다. 원래 환경보호만을 규정하고 있던 독일 연방기본법 제20조a가 2002년에 “국가는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으로서, 헌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입법을 통하여 그리고 법률 및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과 사법을 통하여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스위스 역시 연방헌법 제80조에 동물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³⁴⁾ 그러나 동물을 보호할 의무를 헌법에 명시한다고 해서 동물의 권리가 전부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과연 동물이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다.³⁵⁾

2) 미국

미국에서는 동물운송 시 동물에게 충분한 음식과 물을 제공해야 하고 휴식 없이 연속적으로 28시간 이상을 운송수단이나 선박에 가둬 두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1873년에 제정되었으며, 1958년에 인도적 도축법(Humane Slaughter Act)

32)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96_79> (최종확인 2020. 7. 9). EU는 1997년 Calves Directive를 제정하여 1998.1.1.부터는 8주 이상의 송아지를, 2008년부터는 송아지의 나무틀 사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다(Peter Stevenson, “European and International Legislation: A Way Forward for the Protection of Farm Animals?”, *Animal Law in Australasia*, Federation Press Sydney, 2009, p.310).

33) 나인지, “국내동물복지의 동향”, 「세계농업」 제16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3면.

34) 홍완식, “독일의 동물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유럽헌법연구」 제25호, 유럽헌법학회, 2017, 528면; 홍완식, 「반려견 법률 상식」, 마인드맵, 2018, 28-29면.

35) 김정옥·김정규, “동물복지정책의 비용편익 식별 및 추정방안 -법적 정합성 및 감정적 효용을 중심으로-”, 「법과 정책」 제26집 제1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0, 5-6면.

이 제정되는 등 개별법에서 농장동물복지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1966년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실험실의 개와 고양이 등 기타 실험동물의 인도적인 관리와 취급을 규제하고, 도난된 애완동물의 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험동물복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1970년에 동물복지법으로 개정되었으며, 2007년 동물 싸움금지시행법이 제정되어, 2008년 동물보호법에서도 이에 대해 규정을 강화하였다.³⁶⁾

동물복지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연방 차원의 법을 따르고 있으나, 일부 지방정부는 농장의 동물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내용을 규정한다.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 사육금지규정의 경우 캘리포니아 2008년, 매사추세츠 2016년, 미시간은 2009년, 오하이오 2010년, 오리건은 2011년, 워싱턴 주는 2011년에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였다.³⁷⁾ 미국의 동물복지정책은 반려동물 및 농장동물 중심으로 법이 제정되었으며, 농장동물용 동물복지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³⁸⁾ 동물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최적의 동물 관리원칙에 따라 직원들을 위한 교육용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 영국

영국은 1822년에 세계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국가이다. 이 법은 소에 대한 잔인하고 부적절한 처우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를 잔혹하게 때리거나 무거운 짐을 지우면 법률 위반이 된다. 이후 ‘동물보호법’이라 불리는 최초의 일반동물보호법은 1911년에 제정되었고, ‘개 사육에 관한 법’을 비롯해 ‘위험한 야생동물에 관한 법’, ‘동물의 잔혹한 구속에 관한 법’ 등 다양한 이름의 법률이 시행되었다. 2006년의 동물복지법은 그간 동물보호 분야에서 제정된 수많은 개별법을 정비·통합하는 형태로 성립된 법률로서 농업용 동물은 물론 비농업용 동물에게도 적용된다. 동물학대 등과 함께 동물복지에 관한 범죄가 새로

36) 이종인 외, 해외 동물복지 축산정책 현황 조사(보고서), 농림수산식품부, 2014, 50면.

37) <<http://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154>> (최종확인 2020. 7. 10).

38) The North American Meat Institute, *Recommended Animal Handling Guidelines and Audit Guide- A Systemetic Animal Welfar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2019, p.9.

이 인정되었는데, 학대당하고 있는 동물에 대한 수사관·경찰관이 긴급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수색이나 증거 압수 등을 위하여 사인의 토지를 출입할 권한도 주어졌다(동물복지법 제19조).

2019년 동물복지법을 개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물의 보호와 관련하여 서비스제공 동물에 대한 위해(suffering) 판단기준을 정비하였으며, 경찰직무상 활동하는 서비스제공 동물에 대한 위해를 판단할 때 불필요한 고통을 주었는지 여부가 문제됨에 따라, 관계 경찰이 직무상 서비스제공 동물을 통솔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고 당해 경찰이 피고인이 아닌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을 준 행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물복지법 제4조 3A).

2. 우리나라

1) 민법의 측면

우리나라 민법 제98조에 의하면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동물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화물칸에 타야하고, 상속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도 없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있다.³⁹⁾ 사람과 반려견의 관계는 가족법이 아닌 재산법의 규율대상이며, 민사집행법 제195조의 압류금지 대상에 해당되지도 않으므로 채권자의 압류를 막을 수도 없다.⁴⁰⁾ 물론 현행법 아래서도 타인의 개를 죽게 하거나 의료과실로 질병을 악화시킨 경우에 교환가치에 상응하는 손해배상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반려견으로서의 가치를 감안하여 교환가치를 상회하는 치료비나 반려동물 소유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⁴¹⁾

39) 홍진희·김판기, “동물관련 법제의 체계화를 위한 시론적 고찰”, 「법학연구」 통권 제52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143면.

40)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714> 김영철, 반려견의 법적지위에 관한 소고, 법률저널 인터넷판 참조.

41) 대판 2013. 4. 25, 2012다118594.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나 그 규정내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동물에 대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동물 자체가 위자료 청구

동물이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민법상의 논의에 있어서, 유럽에서는 동물을 생명을 갖지 않는 ‘물건’과 구별된 존재로 간주하고 있다. 1988년 오스트리아민법 제285a조,⁴²⁾ 1990년 독일민법 제90a조⁴³⁾ 및 2003년 스위스민법 제641a조⁴⁴⁾ 에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더구나 오스트리아민법 제1332a조,⁴⁵⁾ 독일민법 제251조 제1항은 동물이 상해를 입은 경우 그 동물의 가치에 관계없이 동물치료에 필요한 전액을 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단순한 물건과 동물을 구분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동물의 재산가치를 넘어선 치료비의 청구가 인정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권리의 주체와 객체로만 분류하던 2분법적 체계에서, 권리주체인 사람과 권리객체인 단순한 물건, 그리고 물건 중 생명이 있는 동물로 분류하는 3분법적 체계로 전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2) 동물보호법

우리나라 현행법상 동물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은 동물보호

권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그 동물이 애완견 등 이른바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안락사 당한 개 2마리 자체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배척하는 대신 이와 같은 사정까지 참작하여 원고인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자료 산정은 긍정하였다.

- 42) 오스트리아민법 제285a조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들에 의해 보호된다. 물건에 관한 규정들은 유사한 규정들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동물에 대해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43) 독일민법 제90a조 제1호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Tiere sind keine Sachen).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동물에 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이 조문만 놓고 보면 동물과 사물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90a조와 함께 제903조는 “동물의 소유자는 그 권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동물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中川亜紀子, “ドイツにおける動物保護の変遷と現状”, 「四天王寺大学紀要」第54号, 四天王寺大学, 2012, 539面.
- 44) 2003년 스위스민법 제641a조 제1항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제2항은 동물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해서는 물건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였으며, 스위스채무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동물소유자의 위자료 청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45) 오스트리아민법 제1332a조는 “동물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 만약 그 치료비용이 동물의 가치를 초과한 때에는, 이성적인 동물 보유자가 가해자의 상황에서 이러한 비용을 지불한 범위 내에서 사실상 지불된 치료의 비용 혹은 치료가 시도된 비용이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의사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한국진돗개보호육성법,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10여개가 있는데,⁴⁶⁾ 그 중에서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동물의 보호 및 이용·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여, 동물의 보호, 이용, 관리 등에 대하여는 동물보호법이 일반법적 지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물보호법제에서 동물의 보호의 의미는 동물이 외부의 위협이나 생활의 곤란 등을 겪지 않도록 보살피고 동물 본래의 습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보호는 외부의 위협이나 장애요인이 소멸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개입조치가 수반되기도 한다. 동물보호의 내용으로는 동물을 함부로 살상, 상해, 학대 등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충분한 생활공간의 확보 등 동물의 습성을 고려한 적절한 보살핌, 질병·부상 등에 대한 예방 및 적절한 치료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한편 동물학대는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내법상 동물에 대한 살상 또는 학대행위는 물건 가치를 손상하는 것으로 형법상 재물손괴에 해당하고, 이것은 손상되는 물건 자체에 대한 보호보다는 해당 재물의 권리자를 보호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동물보호법에 의할 경우 동물학대는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되고, 여기서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동물 자체에 대한 보호에 주된 목적이 있다.⁴⁷⁾

46)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은 동물보호법제의 영역이 아니라 동물이용법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7) 장은혜, 사회통합관점에서의 동물정책의 법적 쟁점과 전망(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2018, 19면.

Ⅳ. 동물복지를 위한 법제의 개선

1. 동물보호법의 개정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이 현재의 동물보호법에 포함되어 있는데, 점차 증가하는 반려동물의 사회적 정책 수요에 비교해 볼 때 보다 세부적인 관련 법안들이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영국의 개 사육 및 판매법, 덴마크의 개에 관한 법률 등 필요에 따라 반려동물 중 사회적 중요도가 있는 동물의 경우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영국의 애원동물법, 동물행동법, 동물숙박시설법 등과 같이 단순한 동물보호를 넘어서 실질적인 동물복지를 위한 법률에 대해서도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의 제정도 고려해야 한다.⁴⁸⁾

동물법제 관련하여 일반법 역할을 하는 동물보호법에는 하나의 법률에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연관 산업에 관한 내용 등 모든 것이 담겨져 있고 주관부서도 서로 달라,⁴⁹⁾ 향후 사회적 수요와 효율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법들이 제·개정되거나 보완될 필요성이 크다. 농장동물의 경우 제4장 제29조-제31조에 걸쳐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2017년 살충제 계란파동 이후 농장동물의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은 농장동물보호법을 따로 제정하여 농장동물을 반려동물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동물보호법이 농장동물의 사육, 사육환경, 관리, 운송, 도살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일본의 반려동물사료안전법의 경우처럼 반려동물 자체가 아닌 연관 산

48) 전상근, 동물보호, 복지업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관리체계 연구(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2017, 163면.

49) 동물보호법의 주무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이지만, 동물에 관련된 행정 및 법령 등이 농림축산식품부 외에도 환경부(야생동물, 동물원), 해양수산부(해양생물, 수족관), 식약처(동물실험), 문화재청(천연기념물)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됨으로 인해 동물보호정책 수립에 있어 일관성과 연계성 부족, 각 정책의 단편성, 부처 간 이해충돌로 인한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업무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http://www.promisetracker.kr/detail.jsp?sp_no=242> 참조(최종확인 2020. 7.10).

업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필요에 따라 제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늘어나는 맹견사고에 대비하여 맹견에 관련되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에 따라 맹견은 소유자 등 관리자 없이 홀로 밖에 나가서는 안 되고, 생후 3개월이 넘은 맹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 시키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하게 되어 있으나, 맹견을 키우기 위한 허가나 면허제 등의 규정은 따로 있지 않다. 이에 반해 외국에서는 맹견을 소유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맹견에 의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영국은 1991년 ‘맹견법(Act on dangerous dogs)’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도사견, 핏볼테리어 등 4종은 특별통제견으로 규정돼 민간에서 키우는 것이 금지된다.⁵⁰⁾ 만약 개가 사람을 물어 부상을 입힐 경우에는 최대 5년, 사망에 이를 경우 최대 14년의 징역이 견주에게 선고된다. 독일은 맹견 종류를 19종으로 세분화해 관리하며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아메리칸 핏볼테리어 등 4종은 일반인 소유를 금지한다. 맹견은 사전에 공격성 등을 확인하는 기질테스트를 거쳐 공공장소에서의 입마개 의무화 여부가 결정된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는 체고 40cm 또는 체중 20kg의 개는 견주를 평가 후 사육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고 맹견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였다.⁵¹⁾ 그러나 맹견 손해보험이 출시되더라도 연간 보험료가 5,000원에서 1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어,⁵²⁾ 맹견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금액이 지급될지는 의문이며,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맹견소유자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의 제재에 불과하므로, 보험가입금액과 보상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50)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91/65/data.htm>> (최종확인 2020. 7. 12). 특별통제견을 키우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후 반려인은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다. 대인배상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마이크로칩 삽입(2016년부터 적용), 입마개 착용 등을 해야 하고, 번식이나 판매, 교환 등은 불가능하다.

51) 동물보호법 제13조의2 제4항을 신설하여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2021.2.12.부터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52) 현재 반려동물 보험의 특약사항으로 반려동물이 타인이나 타인의 동물을 다치게 했을 경우, 보상한도는 500만원에 불과하다. <<http://www.lotteins.co.kr/web/C/D/A/cda020.jsp?prdtseq=17>> (최종확인 2020. 7. 12).

2. 민법상 물건에 관한 규정의 개정

동물을 사람이나 물건과는 다른 제3의 주체로서 인정하는 유럽 국가들의 민법 개정은 동물보호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심리적인 안정감까지도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⁵³⁾ 우리나라에서도 물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98조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정미 의원은 2017년 3월 대표발의를 통해 동물은 다른 일반적인 물건과는 달리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학대나 사상 등의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생명이 없는 물건에 대한 훼손과는 달리 취급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 민법규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고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도 보호됨을 명시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였다.⁵⁴⁾

이에 대하여 동물이라 하더라도 영업상 사육하고 있는 동물이나 야생 짐승 등 다양한 종류 또는 관리 형태의 동물이 존재하므로, 동물의 물건성 여부를 일률적으로 규율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⁵⁵⁾ 그 이유는 동물이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다양한 종류와 방법으로 이용된다는 것이 법적·일상적 현실이므로, 동물 중에서 물건성을 보유하거나 계속적으로 유지시켜야 할 동물들에 대해서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계속 준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물건에서 제외되는 동물 범위가 명확하게 규율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였다. 또한 동물에 관한 개별법이 각각 존재하고 각 법마다 상이한 목적에 따른 정의를 두고 있으며, 동물의 권리객체성과 물건성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모든 동물을 일반적인 물건과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기 전까지는 물건에서 제외하는 동물의 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⁵⁶⁾

그러나 위 개정안과 같이 규율하여 동물을 물건에서 제외하더라도 동물에게 사람과 같은 권리주체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동물은 여전히 사람으로부터 보

53) 윤철홍,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민사법학」 제56호, 한국민사법학회, 2011, 400-401면.

54)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1S7G0J3J2V1Y1O5C1Z0I4K3Q0K2H6> (최종확인 2020. 7. 12).

55) 이문환, 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제6313호, 검토보고서, 2017, 8면.

56) 위의 보고서, 9면.

호와 관리를 받는 대상이므로, 생명체로서의 동물이 권리주체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물을 일반 물건과 달리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동물 소유주의 권리행사나 의무가 어떻게 제한되고 부담되는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논의와 규율이 필요하다. 현재 동물과 관련된 법률은 동물보호법 외에도 20여개의 법률들로 산재되어 있으며, 그 소관부처도 서로 다르다. 이에 따라 동물과 관련된 사건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용할 법률을 체계화하기 위해 동물의 개념 및 분류, 법적지위, 동물의 관리와 보호 및 복지에 관한 내용, 동물관련 부서의 조정 및 컨트롤타워 도입에 관한 내용 등을 담은 동물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⁵⁷⁾

그리고 동물을 물건에서 제외한다면 동물이 물건임을 전제로 규정되었던 조항들 중 개정안과 부조화 내지 충돌될 수 있는 조항들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물의 상해로 말미암아 치료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할 경우,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한다면 특별한 문제없이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비용 정도로 배상을 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정미의원의 개정안과 같이 동물을 물건에서 제외하고 하나의 생명체로 간주하게 되면, 특히 소유자와 동물 간의 애착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동물의 상해 시 교환가치 정도의 배상만으로는 적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⁵⁸⁾ 나아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현행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물을 물건에서 제외하게 되면 제19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⁵⁹⁾에 포함되어 있는 동물을 제외한 나머지 동물들은 모두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서도 반려동물이나 가축 중 영업용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압류를 제한하는 규정의 신설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57) 홍진희·김판기, 앞의 논문, 146면.

58) 윤철홍, 앞의 논문, 427면.

59)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3. 반려동물신탁제도의 활성화

반려동물소유자의 사후에 동물의 남은 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탁법상 수탁자에게 동물의 관리와 생존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⁶⁰⁾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할 수 있다.⁶¹⁾ 유언대용신탁의 종류는 위탁자 생존 시에 수익권이 발생하는 신탁(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1호)과 위탁자 사망 이후 급부를 받는 신탁(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2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유언대용신탁제도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는 민법상 유언에 비해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의 관리와 처분 및 상속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17년 국민은행에서 반려동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상품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제는 반려동물의 생존과 관리를 위해 다양한 사법적 대응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시기임은 분명해 보인다.

국민은행이 2017년 7월에 출시한 ‘펫코노미신탁’은 주인 사망 후 반려동물이 새 주인을 만났을 때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이 경우 부가서비스를 확대해 동물병원을 이용할 때에도 신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반려동물 용품할인 연계서비스, 반려동물 행사, 반려동물 카페, 반려동물 욕탕, 반려동물 해수욕장 이용 시에도 기관과 연계를 통한 금융상품 매칭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대상 반려동물은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이 가능한 개로 한정된 후 고양이까지 확대되었다.⁶²⁾

60) 반려동물신탁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신탁자로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또는 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에게 신탁을 이용하여 미리 자금을 맡기고 본인 사후에 수탁자에게 반려동물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조성자, “미국 반려동물 보호법제와 시사점 -미국 반려동물신탁 제도를 중심으로-”, 『강원법학』 53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9, 354면).

61) 유언신탁은 위탁자의 유언에 의해 신탁이 설정되는 것이므로 유언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신탁계약 또는 신탁선언으로 신탁이 설정되는 것이며(따라서 유언의 방식을 따를 필요가 없다), 유언신탁은 위탁자의 사후에 신탁이 효력을 발생하는 사후신탁인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생전에 이미 효력이 발생하여 존재하는 생전신탁(Living Trust)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6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610181806001#csidxf78d89538c5c5ba874a456033320a57> (최종확인 2020. 7. 13). 위 제품의 가입대상은 만19세 이상

동물에 관련된 외국에서의 신탁제도를 보면, 일본에서의 펫신탁은 동물소유자(위탁자)가 친척이나 친구 등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가 동물보호 시설 등의 위탁시설에 사육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인데, 동물소유자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반려동물의 사망 시까지의 시설이용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수탁자가 위탁자의 돈을 반려동물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신탁감독인을 선택적으로 둘 수 있다. 신탁감독인의 자격은 반려동물 신탁계약을 작성하는 변호사와 행정서사, 사법서사 등을 둘 수 있다.⁶³⁾ 미국의 반려동물신탁은 1969년에 위스콘신주에서 처음 반려동물보호신탁을 주법으로 제정한 이후, 2016년 미네소타주가 반려동물신탁을 법제화함으로써 미국의 모든 주는 반려동물신탁을 법제화하고 있다. 반려동물신탁은 1993년 개정 Uniform Probate Code 2-907조(b)항에 반영되었다.⁶⁴⁾

이와 같이 반려동물을 위해 금융상품으로서의 신탁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새로운 부양자가 신탁금을 받고 난 이후에 신탁자의 뜻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와 양육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점검이나 통제장치가 없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는 있다.⁶⁵⁾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동물의 복지를 위한 입법적 개선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기술하였다.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의 복지증진을 통해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의 개인으로 일시금을 맡기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월 적립식인 경우에는 1만원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 최고한도는 1,000만원이다.

63) <<https://dot.asahi.com/tenkijp/suppl/2018032900083.html>> (최종확인 2020. 7. 14). 일본의 경우 2019년 8월 생명보험 신탁을 이용하여 동물소유자의 사후 보험금을 반려동물의 사육비용에 충당하는 서비스를 후쿠오카시의 NPO 법인이 시작하였고, 이는 신탁회사를 통해 사망보험금을 반려동물에게 증여하는 법적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https://www.nishinippon.co.jp/item/n/554972/>> (최종확인 2020. 7. 14).

64) 令泉邦子, “アメリカにおける飼主の死後ペット動物を飼育するための信託”, 「法学研究」 82卷 12号, 慶應義塾大学法学研究会. 2009, 654面.

65) 조성자, 앞의 논문, 53면.

공존하며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영국과 미국 등 동물복지 분야에서 앞선 국가들의 동물복지법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동물복지법제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해 보았다. 동물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의 규정에 의할 경우에 동물은 유체물이고 동산이며, 야생동물은 무주물로 간주된다. 또한 동물은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으로 본다. 그러나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유럽국가들은 민법 개정을 통하여 동물의 물건성을 부정하고 동물을 생명을 갖지 않는 ‘물건’과는 구별된 존재로 간주하고 있다. 이처럼 동물의 지위에 대한 새로운 법적 시각은 동물복지를 위한 법제개선 측면에서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물복지를 위한 법제개선 방향으로 몇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물건을 정의하고 있는 민법 제98조를 개정하여 동물의 법적 지위를 사물에서 지각적 존재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최소한 사물과 사람 사이의 동물에 대한 법적 지위를 사람이나 물건과 다른 제3의 범주로 인식하는 것은 동물보호에 대한 보다 공정성을 확립할 것이다. 둘째, 반려동물신탁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현행 신탁법상의 제59조를 적용하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유증 보다도 훨씬 유연하고 다양하게 재산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 소유 반려동물의 생존과 보호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재산관리까지 맡길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고 평가된다. 또한 동물의 특성에 맞는 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동물복지와 더불어 맹견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현실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소유자의 보험가입의무가 예정되어 있으나, 그렇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보험미가입 맹견소유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곽정훈, “피터 싱어의 동물해방론 옹호”, 「도덕윤리과교육」 제50호,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16.
- 구미정, “동물의 권리와 ‘하나님의 형상: 영화 <노아>를 중심으로”, 「생명연구」 제33집,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2016.
- 김선우, “동물복지의 개념 -윤리적 근거 및 소비자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 ”, 「춘계학술대회논문집」, 한국소비자학회, 2014.
- 김성한, “싱어의 동물해방과 사유와 실천 능력 함양으로서의 도덕 교육”, 「인문과학연구」 제35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 김순향, “동물복지(Animal welfare) 증진을 위한 맞춤형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s) 개발에 관한 연구 - 농장동물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2권 제3호, 한국정책과학학회, 2018.
- 김일방, “동물의 권리를 둘러싼 논쟁 -리건(T. Regan)과 코헨(C. Cohen)의 견해를 중심으로-”, 「환경철학」 제20권, 한국환경철학회, 2015.
- 김정욱·김정규, “동물복지정책의 비용편익 식별 및 추정방안 -법적 정합성 및 감정적 효용을 중심으로-”, 「법과 정책」 제26집 제1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0.
- 김향철, “피터 싱어의 동물해방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확장전략”, 「인문학연구」 제118권,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 김형민, “성서적 전통에서 본 동물의 윤리와 법”, 「종교문화비평」 제21권,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종교문화비평학회, 2012.
- 나인지, “국내동물복지의 동향”, 「세계농업」 제16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 박승찬, “인격에 대해 영혼-육체의 통일성이 지니는 의미 -토마스 아퀴나스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철학사상」 제35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0.
- 박종원, “우리나라 동물복지축산의 현황과 법적 과제”, 「환경법과 정책」 제19권, 2017. 9.
- 박찬구, “동물권의 문제와 상생의 생명윤리”, 「윤리연구」 제83호, 한국윤리학회, 2011.
- 소병천, “자연의 법적 지위에 대한 환경법적 소고”, 「환경법연구」 제31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009.
- 우병준, “EU 동물복지정책 동향”, 「세계농업」 제163호, 2014.
- 윤철홍,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민사법학」 제56호, 한국민사법학회, 2011.
- 이종인 외, 해외 동물복지 축산정책 현황 조사(보고서), 농림수산식품부, 2014.

- 이경희, “데카르트의 동물론에서 자동기계와 감각의 문제 -데카르트주의적 ‘동물기계’의 한계 넘어서기-”, 「철학탐구」 제34집,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13.
- 임진호·천의영, “기계인간의 신체변화에 따른 물리적 공간변화의 사례에 관한 연구라 메트리의 인간기계론을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21권,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12.
- 장은혜, 사회통합관점에서의 동물정책의 법적 쟁점과 전망(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2018.
- 전상곤, 동물보호, 복지업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관리체계 연구(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2017.
- 정원규, “벤담-도덕 및 입법의 원리서설-”, 「철학사상」 별책 제2권 제8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3.
- 정창록, “생명 윤리론에서 피터 싱어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생명윤리」 제12권 제2호, 한국생명윤리학회, 2012.
- 조성자, “미국 반려동물 보호법제와 시사점 -미국 반려동물신탁 제도를 중심으로-”, 「강원법학」 53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9.
- 조영란, “라 메트리의 「인간기계론」에 나타난 심신이론과 18세기 생물학”, 「한국과학사학회지」 제13권 2호, 한국과학사학회, 1991.
- 조원용, “동물관련 법제의 입법과정에 관한 일고찰: 지각적 존재(sentient beings)와 업(業, karma)을 기준으로”, 「법학논총」 제33권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조희경, “농장동물복지 실패와 축산물의 안전성”, 동물복지와 축산물 안전성의 관계 세미나자료,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 2007.
- 채형복, “EU 동물복지정책의 한-EU FTA에 대한 함의”, 「통상법률」 제95호, 법무부 국제법무과, 2010.
- 허 경, “동물해방을 바라보는 눈”, 「분자생물학 뉴스」, vol.21 no.4,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09.
- 홍완식, “독일의 동물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유럽헌법연구」 제25호, 유럽헌법학회, 2017.

- _____, 「반려견 법률 상식」, 마인드맵, 2018.
- 홍진희·김판기, “동물관련 법제의 체계화를 위한 시론적 고찰”, 「법학연구」 통권 제52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 諸橋邦彦, “欧州におけるペット動物保護の取組みと保護法制”, *The Reference* 61(1), 国立国会図書館調査及び立法考査局, 2012.
- 令泉邦子, “アメリカにおける飼主の死後ペット動物を飼育するための信託”, *法学研究* 82卷 12号, 慶應義塾大学法学研究会, 2009.
- 川上恵江, “ヨーロッパ思想史における動物観の変遷”, *文学部論叢*, 89(歴史学篇), 熊本大学学術リポジトリ, 2006.
- 中川亜紀子, “ドイツにおける動物保護の変遷と現状”, 「四天王寺大学紀要」 第54号, 四天王寺大学, 2012.
- European Court of Auditors, *Animal welfare in the EU: closing the gap between ambitious goals and practical implementation*, European Union, 2018.
- Peter Stevenson, “European and International Legislation: A Way Forward for the Protection of Farm Animals?”, *Animal Law in Australasia*, Federation Press Sydney, 2009.
- Piers Beirne, *Confronting Animal Abuse: Law, Criminology, and Human-Animal Relationships*,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9,
- The North American Meat Institute, *Recommended Animal Handling Guidelines and Audit Guide -A Systemetic Animal Welfar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2019.

[Abstract]

A Study on Improvement of Litigation for Animal welfare

Kim, Myung-Yeop

S.C, Korea Laws Reform Institute

Park, Kyu-Yong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Animal welfare refers to the state of the animal; the treatment that an animal receives is covered by other terms such as animal care, animal husbandry, and humane treatment. Protecting an animal's welfare means providing for its physical and mental needs. One of the first national laws to protect animals was the UK Cruelty to Animals. As a matter of law, the Korean Civil Act treats animals like ordinary objects or movables Articles 98.

The Animal Protection Act is a Korean legislation to protect life, ensure safety, and promote welfare of animals by providing for matters necessar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and for the protection and appropriate management of animals. The following legislation should be improved for animal welfare.

First, The legal status of animals is in a grey zone, between things and persons. We will revised Article 98 in civil law. It is the evolution of the legal status of animals from things to sentient beings. At least, the recognition of a third category for animals, between things and persons, establishing a fairer protection of animal interests.

Second, We should introduce Animal Trust. It is a social enterprised that is focused on improving access to veterinary care through the delivery of affordable, high quality and full service veterinary clinics by trust law. The

amendment addresses the fundamental limitations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by changing the basic framework of animal abuse by preventing general cruelty to animals.

Third, We should be enacted The Dangerous Dogs Act because of following a series of vicious attacks on children like pit bull terriers. It will be illegal to possess such dogs without a certificate of exemption, which is given only after the dog is neutered, insured, and has a transponder implanted beneath its skin. They must also be muzzled in public places.

Key words : animal welfare, Animal Protection Act, pet trust, status of animal, pet